

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 조안」①

한농연은 2001년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부터 2002년 대선공약 기획위원회를 구성, 대선공약 자료수집 및 토론회 등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준비활동을 해 왔다.

이러한 대선 준비활동을 진행해온 결과물로, 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(안)」을 수립하였으며,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. 또한 한농연은 11월 5일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하여 「대선후보 초청토론회」를 개최한다.

이에, 월간 한농연에서는 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선거 17대 공약 요구사항」을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.

1

농가부채특별법 후속대책 보완 및 농가경제 안정대책 수립

(1) 농가부채특별법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

- 농가부채특별법의 제도 개선
 - 정책자금 금리인하(현행 5%→1%)
 - 정책자금의 대상확대(영농자금, 농지구입자금 등)
 - 상호금융 금리인하 지원(6.5%→3%)
 - 개인부채로 전환된 연대보증피해지원 자금의 금리인하(5%→1%)
- 부채농가의 자산 신속처분 대책 마련
 - 정부(농업기반공사)가 특별기금을 마련하여

부채농가의 자산을 취득

- 차분농가에 이용권을 부여하고, 일정기간(5년)후 자산 취득의 우선권 부여
-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
 - 농가보호를 위해 영농의지 및 경영회생이 가능할 경우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통한 농업 경영의 안정성 마련
 -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 기관의 일방적인 채권회수를 막을 수 있도록 중재법을 도입

(2) 농업정책자금의 공급 확대 및 금리인하를 통한 농가의 부담 경감

-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
 - 정책자금 금리를 1%로 인하

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 조안」①

- 단기정책자금의 비율을 줄이고 장기저리정책 자금의 지원 확대
- 후취담보대출 비율 상향
- 상호금융 이차보전제도 도입
 - 상호금융 여유자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이차보전
 - 정책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상호금융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옴
- 지방자치제도의 농업자금 지원제도 활성화
 -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 지자체가 이자 보전
 - 지자체의 기금조성으로 저리자금 융자
 - 지자체가 농협 시·군지부에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저리로 단기자금 지원

(3)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의 개선

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의 개선
 -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고 적색거래자는 연체해제 즉시 자격 회복
 - 연체자의 경우 경영상태 심사 후 회생가능할 경우 농신보 사용 가능토록 함
 - 현행 1억원 이하의 무입보 보증에서 개인에



-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제도 폐지
- 농업인의 경영과 가계가 미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 필요

2

새로운 농업투자계획 수립 및 농업 투·융자제도의 보완

(1) 현행예산과 별도로 새로운 투융자 정책의 도입

- 농업예산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여 발표
 -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중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직접 발표
-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회생을 위한 농업·농촌 투융자사업(2005~2011) 추진
 - 농수산물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농업경쟁력 확보와 전면적인 농어촌복지대책을 확립하기 위해, 현행 예산과 별도 편성하여 7년간 30조 확보
 - 농업경영체 육성,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, 생산의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역점
- 국가보조사업 유지
 - 45조 투융자사업 이후 투자가 융자로 전환됨으로써, 보조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필요한 정책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유지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

-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,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생산 등

(2)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기간 연장 및 운영 방안 혁신

- 2004년으로 끝나는 15조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기간 연장
 - 매년 1조5천억원씩 2005~2014년까지 기간 연장
- 타부처 사용금액에 대한 평가 및 조정기능 확립으로 효율성 제고
- 기존 농특세 운용실적을 전면 재검토하여, 직접적인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한정하고 농림부가 직접 관장

(3) 농림부문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대비 10%대로 확충

- 최소 향후 10년간 국가전체 예산 대비 10%대로 예산 확충
 - 전체 예산 중 농림예산의 비율은 99년 이후 8%대로 진입
 - 농림부문 예산을 국가전체 예산 대비 10%대로 확충

-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의 축소 없이 새로운 예산 편성
- 농림예산 편성에 농민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(농림부)

3

실질적인 협동조합 개혁으로 일선 조합의 대조합원 봉사기능 강화

(1) 실질적인 구조개혁과 회원조합 지원 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개혁

가. 농협중앙회의 사업개선

- 운동체적 기능 강화
 - 현장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과제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‘현장지향성’을 강화하고, 중앙회 농정활동 담당부서를 독립시켜 각종 농정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개별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
 - 농협 지도사업 내역 공개 및 혁신방안 수립
- 영농자재·생활물자 계통구매사업 개혁

● 표 2-1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예산의 비율

구 분	99	00	01	02
국가예산 (A) (증가율 : %)	921,937	991,299 (7.5)	1,064,864 (7.4)	1,119,767 (5.2)
농림부문예산 (B) (증가율 : %)	77,650	81,623 (5.1)	88,100 (7.9)	92,851 (5.3)
비율 (B / A : %)	8.4	8.2	8.2	8.2

※ 자료 : 농림업주요통계, 농림부, 각년도



▲ 지난 2001년 각도 농업경영인 대회에서 대선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- 중앙회가 독점권을 가지고 회원조합에게 계통구매를 강요하는 문제를 해소하여, 일선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자율선택권을 보장
- 중앙회는 계통계약 조건을 공개하고 중앙회 조건을 최저기준으로 해야 함
- 시가주의가 아니라 원가분석에 입각한 최저 가에 공급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함
- 일선의 공공연한 할인판매와 가격왜곡구조를 초래하는 각종 장려금을 폐지
-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비료 등 영농 자재 사업에서 대농민서비스나 가격인하,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함
- 회원조합의 자율성 보장
 - 중앙회가 획일적인 사업계획 지침을 내려보내고 이를 조합평가시 반영하는 관행을 철폐하여 회원조합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소신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중앙업무지침, 사업계획 수립 지침 등 폐지
- 농민조합원의 복지 강화
 - 회원조합이 일선 농민조합원의 복지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지원
 - 전국적 조직을 갖춘 주요 농민단체들에게 법

률자문 변호사 비용 지원

- 이사회 운영의 개선 및 비상임 이사의 참여 확대
 - 각 사업결과에 대해 보고만 받는 현 이사회 운영의 권한을 확대하고, 자회사 문제, 직원 급여 문제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함
 - 비상임이사의 참여지분 확대

나. 농협중앙회의 기구개편

-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 개편
 - 농협중앙회는 현재 품목별전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만, 사업적 기능이 없는 협의회로는 경제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움
 - 품목조합연합회를 육성하고 지도·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
- 품목·업종조합 적극 육성 및 지원
 - 현재의 지역농협 체제로는 전문화된 농가의 요구 및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실현하기 어려우며, 주산지 품목조합 및 업종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여 시장대응 및 수급조절 가능 수행
- 농협 자회사에 대한 엄정한 사업수행 평가 실시
 - 농협 조직의 무분별한 자회사화 중단
 - 농협 자회사의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 신설
 -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관리·감독 기능 강화

다. 농협중앙회의 제도개선

-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추진
 - 신경분리 추진 시에는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을 도출
 - 경제사업의 독자적 생존방안 마련을 위해 자

- 본금 확충, 품목조합 지원 등 혁신적인 방안 수립
- 시군지부 폐지 등 중복조직 축소
 -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역할이 지자체의 시군금고에 불과하고, 회원조합과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군지부를 폐지해야 함
 - 시·군금고 이관을 위한 금융법 및 기타 제도 개정 검토
- 공명한 회원조합 임원선거 및 선출제도
 - 선관위의 감시·감독 강화
 - 공명선거와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원제 도입, 연설회·토론회 의무화, 직원출신 5년간 제한 등 선거운동 방식 개선

(2)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일선 회원조합의 개혁과 기능 강화

-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경제사업의 활성화
- 신용사업의 혁신
- 참여확대와 투명한 운영
- 조합의 직원관련 각종 제도 개선
- 지도사업 혁신방안
 - 품목별 기술 및 경영지도가 이루어져야 함
 - 일반 조합원 및 이감사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강화
 - 조합장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교육 강화
 - 조합의 지도사업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지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
 - 총회의 보고서를 조합원이 이해하기 쉽도록

- 표준화된 양식 보급
- 농민단체들의 조합원 위탁교육 실시
- 농민복지 강화
 - 농촌복지강화를 위해 회원조합에 복지 전담 직원 배치
 - 직원자녀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어, 조합원에게는 웅자지원에 그침. 조합원도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과 동등하게 지원

4

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축종별 지원 대책 수립

(1) 한우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

- 정부에 대한 한우농가의 신뢰성 회복
 -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 팽배로 조기 출하에 따른 사육기반 붕괴 우려
 - 조기예보체계의 구축을 통해 목표사육두수 설정 및 확고한 한우정책 추진
- 한우 고급육 생산 촉진 및 지원책 강화
- 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법적, 제도적 장치 마련
-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 강화

(2) 축종별로 확고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

- 축종별 조기예보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, 소비 예측 및 사육두수목표 제시
 - 목표 설정에 따른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 회복
- 축종별 범정부 차원의 수급안정책 제시

- 축산관련 각종 지침서 제작, 배포
- 축산관련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

(3)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

- 축산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
- 축사건폐율 재조정
- 축산용 전기의 요금 인하 및 전압 승압시 추가 비용 지원
-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값 안정대책 마련
- 소득세법상의 부업 축산 기준 상향 조정

(4) 방역업무 일원화를 위한 “방역청” 신설

- 가축질병에 체계적인 방역 및 연구 활동 등을 총괄하는 방역청 신설
 - 전국단위 가축질병 방역 및 예찰 기능 수행
 - 소독지원 및 질병관련 체계적인 연구사업 수행
- 돼지콜레라 방역기금 조기 조성
 -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통제에 따른 양돈농 가의 피해분을 지원하기 위해 민·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임
 - 생산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자금 조성에 참여 할 계획으로 정부 역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
 - 재발시 살처분 보상금 지금방안 상향 조정 : 번식모돈 50만원, 자돈 8만원, 육성비육돈 16만원, 폐사돼지 살처분돼지 50% 수준
 - 농가 입식비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활용
-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문제 대책방안 강구
 - 사료내 항생물질 및 주사제 등의 원인으로 축 산물 내에 항생제 잔류문제 우려

- 농가들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정부의 지도·감독 강화

(5) 축산관련 업종별조합연합회 설립 추진 및 지원 확대

- 업종별조합연합회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농협법 개정
 -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
 - 지역농·축협, 영농조합법인의 가입 허용
 - 조합원 자격기준, 대의원수 조정, 자본금 조달방식, 상임이사 선출 방법, 중앙회의 지원 의무 등의 관련 조항 신설 및 보완
- 업종별조합연합회의 지원책 강구
 - 회원조합의 비용출연이 원칙이나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감안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
 - 정부 역시 인가만 해주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합회가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각종 자금 지원방안 강구
 - 장기적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을 연합회에 이관하는 방안 도출

(6) 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지원 대책 수립

-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법적 처리 강화
- 우유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조정방안 마련
- 양계도매시장 건설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유지
 - 공정한 가격결정 방식 도입으로 생산농가의 일방적인 피해 방지
- 계란등급제도 도입시 보완책 마련 시급
 - 계란가공공장 건립, 계란집하장 활성화, 계란



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등이 선결

- LPC를 사회적 인프라로 인정
 -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고, 이를 임대하는 방식 도입(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례)
 - LPC 운영자금 지원 및 부실 LPC 인수시 정부 지원 강화

(7)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

- 축분처리업체에 대한 법적, 제도적 규제 완화
 - 액비화 허가 규정 완화 : 저장탱크 및 토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 완화
 - 퇴비화시 판매규정 완화 : 포장판매 허용, 비료생산업 등록규정 완화
 - 퇴비 판매의 자율 도입
-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
- 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지원
 - 농가차원의 처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 단체별로 공동 처리 시설 설치
- 분뇨처리 위생도에 대한 평가 및 상벌제 도입
 - 1등급은 인센티브, 최하등급은 강력한 패널티 도입
- 우수 축분뇨처리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투자 확대

- 현행 축분뇨 처리시설은 대부분 고가로 시설비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 가중

(8) 수입축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

- 국내 한우산업 유지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 우선
 - 수입 생우와 차별화된 국내 한우시장 구축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
 - 한우산업기반이 갖춰지고, 농가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생우 수입 중단 지도
- 검역기관 및 검역체계 강화
 - 국내 연간 검역능력을 감안한 생우 수입물량은 연간 8,500마리로 추산
 - 생우수입 금지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간접적인 규제 및 검역기능을 강화하여 생우수입량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
- 사육 및 유통과정의 철저한 격리 관리
 - 원산지표시제 실시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수입생우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

(9) 안정적인 '축산발전기금' 재원 확보

- 마사회 당기순이익 중 특별적립금 출연비율을 60%에서 80%로 상향 조정
 - 지방세법을 개정, 경주 마권세의 인하 조치를 통해 재원 확보
-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인 마권세 납부 비율 인하
 - 과천시의 경우 마권세를 통해 연간 2,892억 원의 지방세 소득을 확보
 - 단기적으로 지방세인 마권세의 비중을 5%까지 낮추고,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로 전

환해야 할 것임

- 축산발전기금 운용의 투명화 및 안정성 확보
 - 정부는 38개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작년말부터 통합 펀드를 구성, 채권 및 주식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
 - 안정적인 운영이 관건인 공공 기금의 성격상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자칫 손실을 입을 가능성 상존

래자는 연체 해제 즉시 자격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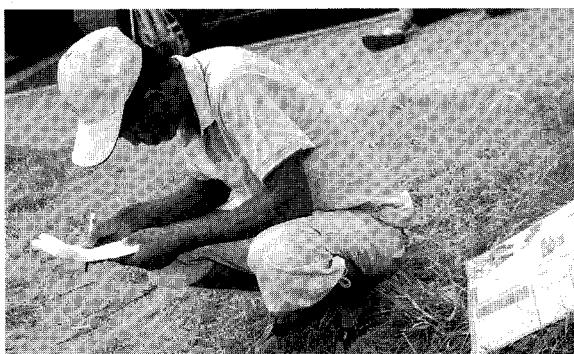
- 국회 차원의 “농가부채 대책위원회” 구성
- 부채총액이 심각한 수준의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
 - 농가보호 차원에서 영농 의지 및 경영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과의 채무 조정을 통해 농가의 회생 여력을 제고시킴
 -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채권 회수를 막을 수 있는 “중재법” 도입

5

농업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·개정으로
농업회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(1) “농가부채특별법” 개정 등 후속대책 수립

- “농가부채특별법” 개정을 통한 보완 사항
 -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(5%→1%)
 - 상호금융 지원자금 금리 인하(6.5%→3%)
 - 개인부채로 전환된 연대보증피해지원 자금의 금리 인하(5%→1%)
 - 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책의 지원대상 확대
 -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고, 적색거



▲ 지난해 각 도대회에서 대선공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열중하는 회원.

(2)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“학교급식법” 개정

- 미국의 사례처럼 학교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 극대화
 - 농업농촌기본법 제2조에 의거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최대한 사용되도록 학교급식의 운영원칙과 관리기준 규정
- 학교급식 관련 제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

(3) 협동조합개혁 추진을 위한 “농업협동조합법” 개정

-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의 폐지 및 기능을 회원조합으로 이관
- 품목별조합연합회 지원 방안 강구
- 회원조합장 선거제도 개선
- 농협중앙회 신·경분리에 대한 입장 정립 촉구

(4) “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” 제정으로 실질적인 농어촌복지정책 추진

- “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” 연내 제정

(5) 식량자급 목표 설정을 위한 “농업·농촌 기본법” 개정

- 농업·농촌기본법 시행령에 식량자급률 목표 명시
- 자급량 설정에 따른 적정규모의 농지 확보

6

농업재해대책법 제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

(1) 재난 극복 차원의 농업재해대책법 제정

- (가칭)농업재해대책법 제정 촉구
 - 현행 농·어업재해대책법을 대폭 강화한 농업재해대책법 제정
 -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농업재해대책 대폭 개선
 - 복구비를 복구이전에도 지급 가능토록 하는 '재해복구비가지급제도(가칭)' 규정

(2)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공영보험적 기능 강화

- 보험대상 작물 확대 적용
-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
 - 보험료 인상없이 농·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(수해·풍해·냉해·우박·서리·조해·설해·동해·병충해) 위험을 모두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, 농가에 대한 보장 역시 90% 이상 수준으로 확대
 - 태풍에 대해 기상청 기준의 돌풍도 포함하는 등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
- 보험 운영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실시

-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보험인 만큼 보험업법에 근거한 일반 보험업자 배제(농작물보험법 제5조①)
-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상 운영주체를 농협중앙회로 한정하고 재보험 역시 국가에서 인수
- 순보험료의 80%를 국가에서 부담

7

농업관련 기관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

(1) 청와대 [농정수석실] 재설치 및 대통령 [농정자문위원회] 신설

- 청와대 농정수석 제도 부활 관철
- 청와대 농정수석 부활 후 농업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-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 자문위원회 구성

(2) 농림부 장관 부총리 격상 및 농림부 내 각 종 위원회 조직 개편

- 농림부 장관직을 부총리로 격상
-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·폐합 하여 위원회의 수를 줄이고, 운영을 내실화 함
 - 매년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·폐합
 - 공무원 업무평가에 위원회 활동 평가 철저한 반영

「한농연 2002년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 조안」①

- 표 15-1 농림부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(2002년 4월 30일 현재)
(법령에 의한 16개 위원회 중 13개 위원회 현황)

위원회 명칭	회의주기	당연직과 위촉직 비율	당연직위원의 국가공무원 비율	농민단체 및 농민 구성 비율	
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	연 2회	7 : 3	7/6	85.7%	10/1 10%
농산물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	비정기	10 : 17	10/9	90%	27/3 11.1%
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	비정기	25 : 25	25/20	80%	50/5 10%
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	비정기	9 : 10	9/6	66.6%	19/0 0%
축산발전심의위원회	비정기	6 : 19	6/6	100%	25/10 40%
농업관측위원회	연 1회	12 : 9	12/11	91.6%	21/2 9.5%
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	비정기	0 : 12	-	-	12/3 25%
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	비정기	14 : 4	14/13	92.8%	18/1 5.5%
양곡유통위원회	비정기	0 : 20	-	-	20/5 25%
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	비정기	11 : 11	11/9	81.8%	22/4 18.1%
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심의회	비정기	7 : 0	7/6	85.7%	7/0 0%
품종보호심판위원회	비정기	7 : 1	8/8	100%	7/0 0%
종자위원회	비정기	0 : 8	-	-	8/3 37.5%

- 양곡유통위원회를 비롯한 형식적인 면파성 위원회를 없애고, (가칭) 농가소득안정위원회, 농촌복지 심의위원회 등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위원회 신설

○ 농림부 산하 위원회 농민단체 참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- 농민단체 참가 비율을 관련 법령에 의해 40% 이상으로 규정을 의무화

○ 당연직 위원 대폭 축소

- 전체위원 구성 비율에서 당연직 위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, 또한 당연직 위원에서 국가 공무원(농림부, 정부 산하 기관) 비율이 80~90%를 차지함

-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 官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

(3) 농촌진흥청 지도사업 강화 및 대농민 서비스 강화방안 마련

○ 지도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향적 연구 기관으로써 농촌진흥청의 조직 개편 및 역할 재조정

- 농촌지도사업과 지도사업과 연계된 시험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

- 지방국립대학 및 회원농협과 연계한 농촌진흥청 지도사업 강화 방안 마련 및 연내 Master Plan 수립·공개

-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원을 국

- 가직으로 환원
- 농촌진흥청의 사업 및 연구실적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대 농민서비스 강화
 -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의 현장 적용률과 농민 소득향상의 기여도에 따른 철저한 연구업적 평가 연1회 실시
 - 농촌진흥청의 사업 평가단 구성에 현장 농민을 비롯한 농민대표 참여 보장과 사업 평가 공개
 - 평가후 시정 업무에 대한 보완 시스템 구축
 -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 개선
 - 농촌진흥청 산하 농약안정성심의위원회와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의 관리·감독 권한을 준사법권이 있는 농림부로 이관
 - 농약안정성심의위원회,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 등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각 종위원회에
- 실수요자인 농민들의 참여 40% 이상 보장
- (4) 농업기반공사 대농민 서비스 강화 및 물 관리 시스템 일원화 방안 마련
- 정부 주도로 사업집행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물관리 기관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역할 재조정
 - 간척사업 축소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재편성
 -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인사·조직 개편 및 집중화
 - 물관리 시스템의 일원화 구축
 -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장기적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농업기반공사로 편입시킴으로써 물관리 시스템 일원화 구축

● 표 15-5 농업기반공사 통합 전후 물관리 예산 비교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分	통 합 전			통 합 후	
	1997	1998	1999	2000	2001
급수비	40,208,241	37,226,692	38,992,950	33,991,981	34,115,459
보수비	23,224,648	24,700,099	32,167,644	24,566,092	34,264,589
계	63,432,889	61,926,791	71,160,594	58,558,073	68,380,048

● 표 15-6 수리시설 관리 현황

구 分	기반공사 관리	지자체 관리	계
저수지	3,299	14,614	17,913
양·배수장	3,572	2,974	6,546
최입보	3,897	14,453	18,350
집수암거	466	3,234	3,680
관정	1,081	16,973	18,054
계	12,295	52,248	64,543

(5)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장 지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
-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“연구과제 심사위원회” 설립
 - 연구과제 심사위원회를 통한 현장 지향적 연구 강화와 연구 성과의 평가
 -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가 현장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설정에 있어서 농민단체의 참여 보장
 - “연구과제심사위원회” 위원 선정에 있어서 농민단체 참가비율 50% 이상 의무화
-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선출과정에서 연구원 직원 대표 및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 참여 보장
 -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선출과정에서 연구원 직원 및 농민단체 인사 참여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과 투명성 확보

(6) 마사회 수익금을 실질적인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

- ‘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’의 관리·운영 주체를 현행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즉각 이관
- 마사회 당기순이익 중 특별적립금 출연비율을 60%에서 80%로 상향조정
- 마사회 수익금 농업·농촌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8

농관련산업의 구조조정 및 농민 중심의 수급정책 수립

(1) 농관련산업 강력한 구조조정 시행

- 구조조정을 통한 농관련산업 경쟁력 강화
 - 종합농기계업체간에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OEM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, 경쟁력 있는 주요 기종 위주의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가격하락 유도
 - 영세비료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친환경농업 정책에 맞는 양질의 저렴한 유기질비료 개발 지원 강화
 - 경쟁력 있는 토종종자 수집·육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민간, 학계 등으로 분산·관리되고 있는 종자를 국가적 계획과 지원 속에 체계적으로 보존·유지

(2) 농협 시·군단위 농기자재종합판매점 설립 추진

- ‘농협 농기자재종합판매점’ 설립
 - 농협의 계통구매 가격교섭력 및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농기자재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할인마트식의 농기자재종합 판매점을 시·군 단위별로 설립
 - 종합센터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기자재에 대해 가격정찰제를 실시하고, 제품별 성능 및 특징 비교표를 비치하여 농민들이 쉽게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운영
 - 농기계 수리 및 사후봉사 업무를 병행하고, 원활한 A/S를 위해 종합센터별 농기계부품관리업무 전산화
- 구매내역의 투명성 확보 장치 강구
 - 구매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의 사본과 전년도 구매물량 및 금년도 계획을 의무적으로 창구

● 표 17-5 농업인 안전공제와 산재보험간 보장내용 비교

농업인 안전공제 (계약 3,000만원 기준)	산재보험 (여객운수업 종사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망위로금 : 900만원 ○ 장해급여 : 1급장해시 최고 7,500만원 - 일반재해도 포함 ○ 기타 : 재해 치료비(자부담 10만원에 최고 100만원), 농기계 손해, 농기계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특약으로 담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의비 : 864만원 ○ 유족급여 : 9,360만원 ○ 상병보상연금 : 폐질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 1,620만원 ○ 요양급여 : 부상 또는 질병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○ 휴업급여 : 휴업일수×5만원 ○ 장해급여 : 1급장해시 치유 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간 2,360여 만원 ○ 개호비 : 노동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

에 비치도록 강제 규정 마련

- 업무상 심각한 비밀이 요구되는 계약서의 경우, 계약서의 명칭만 표시하여 알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
- 중앙회와 지역본부, 시·군지부, 조합의 수수료율을 공개하고,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

(3) 중고농기계 활용정책 마련

- 지자체 중심의 중고농기계 임대사업 육성
 - 중고농기계 상설매장을 시·군단위 지자체별로 육성하고 대리운전자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, 농기계 운행능력이 부족한 농가에게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중고농기계 임대사업 육성
 - 중고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(지자체별 중고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통해 차기 예산배정에 반영)
- 마을단위 농기계보관창고 확충
 - 정부의 농기계보관창고 설립보조비를 현행 20%에서 50%로 늘려 마을단위 농기계보관창고를 대폭 확충
 - 농업기술원, 농협, 일반업체 등이 공동으로

참여하는 합동농기계 수리팀을 구성하여 농기계보관창고 중심의 정기 순회관리 실시(영농철에는 상시배치)

(4) 농작업 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, 근본적인 대책 수립 촉구

- 농작업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 강화
 - 농기자재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·감독을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는 농림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 강구
 - 농업기계화연구소 내 농기계안전성검사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기존 안전장치 구조확인 업무에서 탈피하여 기종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창조적 연구·검정활동 시행
 - 농기계 30개 기종에 대해 업체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검사를 모든 기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중단, 시판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 단행
-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
- 농작업재해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 강화